

# 모범직원 포상 규칙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체육회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직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범 직원이라 함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생활체육활성화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의한 상의 명칭은 본회 직원모범상 이라 한다.

② 포상훈격은 회장 표창으로 한다.

**제4조(적용)** 이 규칙은 본회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추천)** ① 직원모범상은 국장이 추천한다.

② 직원모범상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직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선발)** 직원모범상 후보자는 제5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본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명 이내로 선발하여 매년 말 포상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7조(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창 추천일 현재 직원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3. 공·사생활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비위조사 중에 있는 자
4. 이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중 3년 미만인 자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직원모범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별지 제1호 서식) 수여
2. 3일 이내의 포상휴가
3. 수상자의 근무희망부서 결원발생시 우선 전보
4. 다음연도 연봉 계약 시 실적급 부여

제10조(수상자명부 관리) 총괄팀장은 직원모범상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본회직원모범상 수상자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호

# 표 창 장

직위

성명 :

귀직은 직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어  
○○년도 남양주시체육회 모범직원으로서  
선발되었기 이 상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남양주시체육회장 ○○○

